

의안번호	제 995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
관한 조례안

발 의 자	김기창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2년 3월 3일

충청북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(김기창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95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2년 3월 3일
발 의 자 : 김기창, 서동학, 박우양,
연철흙, 전원표, 황규철,
임영은

1. 제안이유

도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보다 효과적인 소방정책의 추진과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소방발전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 소속하에 소방발전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
- 다.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5조)
- 라. 위원의 자격 및 임기, 제척·기피·회피, 추천 및 위촉, 해촉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에서 안 제11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- 나. 예산조치 : 붙임
- 다. 협의 : 충청북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
- 라. 조례안 예고 : 2022.3.7. ~ 2022.3.14

충청북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민을 위한 소방정책의 개발·개선 및 추진 등 자문역할을 담당하는 소방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 및 명칭) ① 충청북도 소방발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충청북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(이하 “소방관서장”이라 한다) 소속하에 설치할 수 있으며, 주요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명칭은 “충청북도 소방발전위원회” 또는 “○○소방서 발전위원회”로 한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할 수 있다.

1. 충청북도 소방본부(소방서)의 기본정책
2. 충청북도 소방본부(소방서)의 장·단기 발전방향
3. 소방·안전에 관한 새로운 정책 및 개선
4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소방행정, 재난예방 또는 구조구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
2. 해당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모범이 되는 주요 인사로서 소방 관련 정책의 개발·개선 및 추진 등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은 사람
3. 그 밖에 소방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장을 간사로 둘 수 있다.

④ 위원장, 부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은 각 분과위원회에 소속된다.

제5조(분과위원회)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1. 소방행정분과위원회
2. 재난예방분과위원회
3. 구조구급분과위원회

② 분과위원회는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
제6조(회의)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,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, 임시회는 필요할 경우 소방관서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로 개최한다.

② 위원회 회의는 소방관서장, 기능별 부서장, 심의안전 관련 해당부서장, 분과별 담당자 등이 참석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소방관서장에게 통보한다.

제7조(임무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·주재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특별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④ 위원은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소방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
제8조(위원의 자격 및 임기)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두 차례 만 연임할 수 있다.

②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한다.

③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④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9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,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②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
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10조(위원의 추천 및 위촉) ① 소방관서의 각 부서장은 해촉 위원 발생 시 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.

②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을 심의를 거쳐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제11조(위원의 해촉) 소방관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 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
4. 질병·심신장애·국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5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

제12조(지원) 소방관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운영에 관한 비용을 집행할 수 있다.

제13조(포상) 충청북도지사는 소방발전 및 소방안전에 크게 이바지 한 법인·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 발취

□ 지방자치법 [법률 제17893호, 시행 2021. 1. 13. 시행]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
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
나. 조례·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 및 그 운영·관리

제130조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(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,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, 위원회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·절차,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·절차,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·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해서는 아니 되며,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31380호, 시행 2021. 1. 5.]

제80조(자문기관의 설치요건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(이하 “자문기관”이라 한다)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
2.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

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81조(자문기관의 구성) ①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,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82조(자문기관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.

충청북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충청북도민을 위한 소방정책의 개발·개선 및 추진 등 자문역할을 담당하는 소방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

2. 비용발생 요인

- 발전위원회 안전 심의 및 회의 참석 수당 등 발생

3. 관련조문

- 충청북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3조(지원)

4. 비용추계 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소방활동의 효율성 제고 및 새로운 소방정책 발굴, 안전문화 확산 기여
- 소방발전위원회 안전심사 및 회의 수당

※ 소방본부(10명) 및 12개 소방서(각 10명) * 총 130명

- (수당 1인) 100천원 × 130명 = 13,000천원

- (회의 연 4회) 13,000천원 × 4회 = 52,000천원

☞ 각종위원회 수당지급 기준(제5조 관련)

나. 추계 결과 : 22년부터 5년간 260,000천원 소요

다. 재원조달방안

- 도비(100%)로 위원회 안전 심사 및 회의 수당 지급

